질병관리청 공고 제2026-222호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(제23조 관련)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15일

질병관리청장

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감염병 격리자 등 외출 사유 공고

□ **대상자** :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중 보건소로부터 격리 명령을 받은 자

□ **외출 사유 :**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

□ **외출 시간** : **사전투표 2일차(5.30.) 17시** 또는 **선거일(6.3.) 17시 이후 외출이 가능**하며,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

□ **외출 시 주의사항**

○ **이동방법** : 도보, 자차, 대중교통 이용 가능

* 제1급감염병 격리자는 보건소 동행 하에 구급차로 이동

○ **주의사항** : 감염병별 보호장비(마스크, 장갑 등) 착용 및 방역지침 준수,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